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환경부공고제2020-64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인 전기·전자제품의 제외항목을 추가하여 관련 국제 지침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의 유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하고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8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EU의 관련 지침(RoHS)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 장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함

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외항목 추가(안 제14조, 안 제15조의3)

EU의 관련 지침(WEEE)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 또는 군사적 장비,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항목으로 추가

다. 장부 기록 보존 요건 완화(안 제32조)

회수·재활용의무대상자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제조·수입관리대장 및 매입·판매 관리대장 이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장부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라. 부과금 감경,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조항 신설에 따른 보완(안 제34조, 안 제35조)

부과금 감경 및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 등 조항이 '16년도 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운영관리 정보 처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완함

마.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안 별표1)

자동차판매기 등 23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납·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여 국내 제조 또는 해외제품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에의 유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바.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안 별표1의2)

국제환경기준 RoHS II(Directive 2015/862/EU)를 반영하여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국내에서도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함

\* (가소제) 단단한 플라스틱의 성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탄성을 주는 유기물질

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국제 환경기준에 따라 정비(안 별표2)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규정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예외항목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국제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 국내기준을 변경함

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그 방법과 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자.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함유기준 위반업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별표 8)

법정 유해물질 함량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횟수에 상관없이 3천만원으로 동일하여 최초 위반업체와 상습 위반업체간 차이가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최초 위반한 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ujk0206@korea.kr](mailto:ujk0206@korea.kr)
- 팩스 : 044-201-7394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5,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환경부공고제2020-64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환경부 장관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수정  
- [별표] 연번 “61”, “129”, “207”, “275”, “287”, “333”, “506”, “535”, “536”, “640”, “668”, “675”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 연번 “742”부터 “751”까지를 신설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61	Benzaldehyde	100-52-7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2029.12.31.
129	2-Aminoethanol	141-43-5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07	Ammonia, aqueous solution	1336-21-6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75	Calcium	7440-70-2	1-나. 살조제	2022.12.31.
287	Potassium iodide	7681-11-0	1-가. 살균제	2022.12.31.
333	3,7-Dimethylocta-1,6-dien-3-ol; 2-(4-Methylcyclohex-3-en-1-yl)propan-2-ol; 1-Methyl-4-propan-2-ylbenzene; 4-Methyl-1-propan-2-ylbicyclo[3.1.0]hexan-4-ol; 5-Methyl-2-propan-2-ylphenol; Thyme oils	8007-46-3	1-가. 살균제	2022.12.31.
506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52304-36-6	2-다. 살충제	2022.12.31.
535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64742-47-8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536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64742-55-8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640	1-(6-chloropyridin-3-ylmethyl)-N-nitroimidazolidin-2-ylideneamine; Imidacloprid	138261-41-3	3-라. 목재용 보존제	2024.12.31.
668	Silver phosphate glass	308069-39-8	1-나. 살조제	2022.12.31.
			2-가. 살서제	2022.12.31.
			2-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2024.12.31.
			2-다. 살충제	2022.12.31.
			2-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12.31.
			2-마. 기피제	2022.12.31.